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581
----------	-----

2023년 4월 27일
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3년 3월 27일, 박춘선 의원 외 26명
- 나. 회부일자 : 2023년 4월 3일
- 다. 상정일자 : 제318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23년 4월 27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박춘선 의원]

가. 제안이유

- 반려동물 보호자의 의무교육 필요성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를 반영하여 성숙한 반려인 양성을 위해 동물 입양 전 교육 수수료 시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수수료 감면을 지원하는 한편, 동물보호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를 위해 '서울 동물보호의 날'을 지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1) '서울 동물보호의 날'을 정하고, 적합한 행사 개최 및 관련 사업의 실시와 관련 민간단체의 활동을 지원(안 제12조)
- 2) 반려동물 입양 교육 수수료 시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수수료 감면(안 제2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동물보호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4. 전문위원 검토보고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려동물 보호자의 의무교육 필요성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를 반영하여 성숙한 반려인 양성을 위해 동물 입양 전 교육 수료 시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수수료 감면을 지원하고, 동물보호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를 위해 ‘서울 동물보호의 날’을 지정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최근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시민이 급증한 반면, 동물학대, 동물유기, 안전 사고 발생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또한 증가하고 있어 「동물보호법」에 서는 소유자등¹⁾의 책임을 강화하여 책임 있는 사육문화 조성 및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유도하고 있음. 따라서 동물보호에 대한 시민 인식을 제고하고 교육을 통해 성숙한 반려인을 양성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12조는 동물보호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를 위해 서울시가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세계 동물의 날’²⁾인 10월 4일을 ‘서울 동물보호의 날’로 지정하는 것으로써 이에 대한 이견은 없음.³⁾
- 안 제25조는 동물 입양 전 교육을 강화하여 동물학대 및 동물유기를 예방하고 책임있는 보호자를 양성하고자 반려동물 입양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1) 제2조(정의) 3.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2) 1931년 이탈리아 피렌체 생태학자대회에서 ‘세계 동물의 날’ 제정

3)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세계 동물의 날’에 반려동물 관련 행사를 실시(강동구, 노원구, 송파구, 광진구, 금천구, 관악구, 강남구, 성동구 등) 하였고, 서울대공원은 ‘행동 풍부화’ 사업을 추진한 바 있음.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수수료(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감면하는 것으로 교육 활성화를 위한 좋은 방안으로 판단됨.

특히 지난해 실시한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 결과⁴⁾에 따르면 반려동물 소유자 의무교육 도입에 대해 반려인 89.2%, 비반려인 89.1% 모두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서울시 온라인 여론조사 결과(2022)⁵⁾에서도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 수수료 시 동물등록 수수료 감면에 대해 찬성의견(78.3%)이 주로 나타난 바 있음.

- 한편, 동물등록방식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및 별표2(동물 등록번호의 부여방법 등)에 따라 내장형과 외장형을 병행하여 시행⁶⁾하고 있으나, 2021년 2월 동물판매 시 소유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동물을 등록 후 판매하도록 영업자 준수사항이 개정된⁷⁾ 이후 상대적으로 비용이 비싼 내장형(3~8만원)보다 외장형(8천원~1만5천원)이 많아지는 추세에 있음.⁸⁾

서울시의 경우 2020년 대비 2022년에는 내장형의 비율이 66.7%에서 43.9%로 감소하였고, 외장형은 15.7%에서 56.1%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붙임1 참조]

- 그러나 외장형의 경우 무선전자식별장치의 탈착과 부착이 쉽고, 분실 우려가 높아 동물유기 방지의 효과가 낮은 반면 내장형은 1회 체내 주입으로 동물 생존기간 동안 분실 및 훼손될 우려가 없어 동물의 유실·유기 방지에 효과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4)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2022.11),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4.반려동물 소유자 의무교육에 대한 인식)
5) 서울시 반려동물 정책 수립을 위한 여론조사(서울시 온라인 여론조사 시스템)
6)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20. 8. 21.): '인식표' 방식은 훼손되거나 떨어질 위험이 높아 등록동물을 잃어버리는 경우 소유자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등록방식에서 제외된 바 있음.
7) 동물보호법 개정('21. 2. 12.): 동물등록을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동물판매업자는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소유자가 원하는 방식(내장형 또는 외장형)으로 동물등록을 신청한 후 판매하도록 영업자 준수사항 개정됨.
8)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시 등록수수료 외에 별도로 식별장치에 대한 재료비를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함.

이와 같은 문제로 일본에서는 ‘동물애호관리법’을 개정(2019년)해 내장형 등록방식으로 일원화하여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음.

- 서울시는 2019년부터 내장형 동물등록 활성화 사업⁹⁾을 추진하고 있고, 5년간('19년~'23년) 동물 10만 마리 이상을 지원하며 내장형 등록방식의 확산을 일관되게 추진해오고 있으므로, 안 제25조에서 내장형 무선식별 장치에 한해 감면하는 것은 동물 유기 예방에 효과가 높은 방식으로 유도 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¹⁰⁾

9) 내장형 동물등록비 지원 사업기간 : '19년~'22년(4년) → '23년(1년 연장, 총 사업기간 : 5년)

※2023년 동물보호과-3159호(2023.2.14.) 2023년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통한 동물등록 활성화 사업 추진계획

10) 동 조례 제25조(수수료의 감면) 제3호에서는 무선식별장치(내장형)가 장착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50% 감면을 지원하고 있으며, 안 제25조는 입양 교육을 수료한 경우 100% 감면으로 확대하는 것임.

[붙임1] 서울시 동물등록 방식별 등록비율 비교, 동물등록 현황

[동물등록 방식별 등록비율 비교] (최근 3년)

지역	연도	등록방식별 자료					
		등록현황(마리)			등록방식별 비율(%)		
		내장형	외장형	인식표	내장형	외장형	인식표
전국	2020	144,478	43,123	54,556	59.7%	17.8%	22.5%
	2021	236,515	272,620	6,729	45.8%	52.8%	1.3%
	2022	133,490	155,226	0	46.2%	53.8%	0.0%
서울시	2020	30,060	7,081	7,940	66.7%	15.7%	17.6%
	2021	42,311	34,947	794	54.2%	44.8%	1.0%
	2022	18,462	23,618	0	43.9%	56.1%	0.0%

[동물등록 현황] ('22. 12. 25일 기준, 누계)

(단위 : 마리, %)

시도	동물등록수(누계)			
	계	등록형태별		
		내장형	외장형	인식표
전국	3,183,401 (100)	1,575,918 (49.5)	1,225,684 (38.5)	381,797 (12.0)
서울시	571,768 (100)	272,861 (47.7)	244,687 (42.8)	54,220 (9.5)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 제목“(동물생명존중헌장)”을“(동물생명존중헌장 및 동물보호의 날)”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10월 4일을 서울 동물보호의 날로 한다.

③ 시장 또는 구청장은 서울 동물보호의 날에 적합한 행사 개최 및 관련 사업을 실시하거나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민간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시장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반려동물 입양 교육을 수료한 경우(내장형 무선식별장치에 한함): 전액

부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동물생명존중헌장) (생략)</p> <p><신 설></p> <p><신 설></p> <p>제25조(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등록대행 수수료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p> <p>1. ~ 7. (생략)</p> <p><신 설></p>	<p>제12조(동물생명존중헌장 및 동물보호의 날)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p>② 시장은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10월 4일을 서울 동물보호의 날로 한다.</p> <p>③ 시장 또는 구청장은 서울 동물보호의 날에 적합한 행사 개최 및 관련 사업을 실시하거나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민간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p> <p>제25조(수수료의 감면) ----- ----- ----- ----- ----- ----- ----- ----- -----</p> <p>1. ~ 7. (현행과 같음)</p> <p>8. <u>시장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반려동물 입양 교육을 수료한 경우(내장형 무선식별장치에 한함): 전액</u></p>